

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458
----------	------

2025년 4월 25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출일 : 2025년 2월 3일

다. 회부일 : 2025년 2월 6일

라. 상정일 :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3월 4일 상정

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4월 23일 의결(완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진우 평생교육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위탁기간이 2025. 6. 30. 만료 예정임에 따라,
-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고,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운영
-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
 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
 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, 제8조, 제11조
 - 추진 필요성
 -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, 서울특별시의 공공화된 최상의 글로벌 청소년 숙박공간과 전세계 여행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함.
 - 「청소년 기본법」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어,
 - 여행청소년에게 질 높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고,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 - 국내·외 여행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
 - 국내·외 여행청소년의 교류활동 지원 및 생활지도·보호사업
 - 유스호스텔의 시설보수 및 안전 등 물적 설비 관리 등
- 제3자 재위탁 : 해당
 - 필요성 :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갖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위탁
 - 제3자 재위탁 중(예정)인 사무 : 2건
 - *카페 운영 1건 및 식당 운영 1건(현 계약기간 : 2023.7.1.~2025.6.30.)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(개관일자 : 2011. 3. 28.)
- 시설규모 : 부지 1,597㎡ / 건물 9,807㎡
- 주요시설 : 객실(95실), 회의실(6실), 편의시설(요리실, 카페, 레스토랑, 세탁실 등)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- 위치도



○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5.7.1.~2028.6.30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

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4,160백만원('25년)
- 산출근거 : 인건비 1,530백만원, 운영비 1,861백만원, 사업비 338백만원, 사업외지출 및 기타 431백만원

○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,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, 제8조, 제11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-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위탁기간이 만료(2025.6.30.)되어, 공개모집으로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, 3년간(2025.7.1.~2028.6.30.) 운영과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려는 것임.

〈 ‘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’의 개요 〉

- 위탁사무명 :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운영
- 위탁사무
 - 국내·외 여행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
 - 국내·외 여행청소년의 교류활동 지원 및 생활지도·보호사업
 - 유스호스텔의 시설보수 및 안전 등 물적 설비 관리 등
- 제3자 재위탁 : 해당
 - 필요성 : 유스호스텔의 운영 중 전문성 갖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위탁
 - 제3자 재위탁 중(예정)인 사무 : 2건
 - 카페 운영 1건 및 식당 운영 1건(현 계약기간 : 2023.7.1.~2025.6.30.)
-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
- 기관일자 : 2011.3.28.
- 시설규모 : 부지 1,597㎡ / 건물 9,807㎡
- 주요시설 : 객실(95실), 회의실(6실), 편의시설(요리실, 카페, 레스토랑, 세탁실 등)
- 위탁기간 : 3년(2025.7.1. ~ 2028.6.30.)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: 4,160백만원(2025년)
 - 산출근거 : 인건비 1,530백만원, 운영비 1,861백만원, 사업비 338백만원, 사업외 지출 및 기타 431백만원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- 평생교육국은 본 유스호스텔의 위탁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등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 공무원이 직접수행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.
-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여행자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, 환대*(Hospitality) 뿐만 아니라 재정·회계, 숙박시설 관리·운영 및 마케팅·홍보 등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,
 - 특히,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(이하 '본 유스호스텔')의 경우, 여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, 청소년의 활동·교류 등과 관련된 전문성 등도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유스호스텔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환대 → 호스피탈리티(Hospitality) : 손님이나 방문객에게 환대, 친절, 편안함,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. 이는 여행, 숙박, 음식 서비스 등 접객산업에서는 중요한 요소.

-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스호스텔은 총 2개소가 있으며, 본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에게 숙박시설 제공 및 시설대관(회의실), 목적사업(여행 청소년 및 청소년 활동지원 등) 등을 위해 총 22명이 근무하고, 운영성과는 다음과 같음.

〈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정·현원 현황 〉

(단위:명)

구분	총계	정 규 직										비 정 규 직		
		소계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7급	기능	고용	소계	계약	기타
정원	24	24	1	1	1	3	5	9	1	3	-	-	-	-
현원	22	22	1	0	1	4	3	7	2	4	-	-	-	-

〈 최근 3년간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운영성과 〉

(단위:명, %)

구 분	2022년			2023년			2024년		
	계획	달성	달성률	계획	달성	달성률	계획	달성	달성률
소계	123,242	133,068	107.9%	164,425	154,975	94%	155,646	156,234	100.3%
시설대관	118,700	127,687	107.5%	159,870	147,140	92%	150,028	147,016	98%
기타사업	412	998	242.2%	400	1,179	294%	400	360	90%
목적사업	4,130	4,383	106.1%	4,155	6,656	160.1%	5,218	8,858	169.7%

〈 시립 유스호스텔 현황 〉

시설별	소재지	규모(㎡)		수탁법인	개관일	최초 위탁일 (위탁 기간)
		부지	건물			
서울 유스호스텔	중구 퇴계로26	17,223	6,483	(사)한국스카우트연맹 (‘20.01.01)	’06.2.23.	2006.2.23 (‘25.1.1.~’27.12.31.)
하이서울 유스호스텔	영등포구 영신로 200	1,597	9,807	(사)한국청소년연맹 (‘09.11.12)	’11.03.28	2010.7.1 (‘23.7.1~’25.6.30)

- 2010년 개관 이후 25년간 사단법인 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, 본 유스호스텔을 포함한 시립청소년시설을 특정 청소년단체에게 장기위탁하는 것은 시립시설이 민간단체에 부속 시설화되거나, 수탁기관의 공정성 훼손, 위탁사무 수행능력의 저하 또는 청소년 사업의 축소, 변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〈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민간위탁 추진현황 〉

구 분	위탁기간	수탁기관	선정방법
최초위탁	3년(2010.07.01.~2013.06.30.)	(사)한국청소년연맹	공개모집
2차 위탁	2년(2013.07.01.~2015.06.30.)	(사)한국청소년연맹	재계약
3차 위탁	3년(2015.07.01.~2018.06.30.)	(사)한국청소년연맹	공개모집
4차 위탁	2년(2018.07.01.~2020.06.30.)	(사)한국청소년연맹	재계약
5차 위탁	3년(2020.07.01.~2023.06.30.)	(사)한국청소년연맹	공개모집
6차 위탁	2년(2023.07.01.~2025.06.30.)	(사)한국청소년연맹	재계약

- 평생교육국은 시립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, 특정 청소년단체의 장기수탁 문제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, 청소년 활동시설 뿐만 아니라 보호·복지 시설 등에서도 장기수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,
- 장기수탁을 허용하는 평생교육국은 신생 청소년단체의 자생환경 훼손, 중견 청소년단체의 시립시설 수탁 차단 등 민간위탁의 필수 조건인 ‘민간 단체 간 경쟁’을 제약하여 거대 청소년단체들이 시립시설을 독점하기 쉬운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- 평생교육국은 본 동의안에 ‘제3자 위탁’을 포함하여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, 제3자 위탁의 대상은 카페와 식당의 운영임.

〈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내 제3자 위탁 현황 〉

(단위:m²)

단체명	사용목적	면적(m ²)	임대기간	임대료
파***뜨	카페운영	277.2	2023.07.01.~2025.06.30	순매출액 대비 8.5%
식당제***앤비(주)	식당운영	304.01	2023.07.01.~2025.06.30	매출총액의 10%

〈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내 제3자 위탁 계획 〉

추진단위(항목)	기 간	세 부 내 용
사업준비	1월	○ 2025 연간사업 계획(안) 수립
사업운영	연중	○ 식당/카페 위탁 운영 월별 식단 구성,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 매출분석, 마케팅전략 수립 숙박/대관 연계 패키지상품 개발
	5~6월	○ 식당/카페 위탁 운영 입찰 상반기 계약만료에 따른 입찰 추진(~6.30) 협상대상자 선정, 위탁 계약체결, 운영(7.1~)
종합평가	12월	○ 연간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

〈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시설 현황 〉

시설명	용 도
객실	- 청소년 및 일반시민의 편안한 쉼을 위한 숙박시설 (95객실, 330명 수용/ 스탠다드룸, 유스룸, 패밀리룸)
회의실	- 국제회의, 워크숍, 강연,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한 회의실 (6개실/ 대강당1, 대회의실1, 중회의실2, 소회의실3)
레스토랑	- 객실 및 세미나실 이용객을 위한 식당
카페	- 국내·외 여행 청소년을 위한 베이커리, 음료와 브런치 제공 편의시설
요리실(공동주방)	- 국내·외 여행객을 위한 공동주방으로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거나 문화를 나누며, 교류할 수 있는 편의시설
기타 편의시설	- 휴게실, 세탁실, 의무실, 대화정보실(PC), 지도자실, 공용샤워실, 동아리회의실 등
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, 「민간위탁조례」 및 시행규칙은 ‘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·단체·개인 등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’을 금지하고 있으며,
 - 예외적으로 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핵심적이지 않는 사무(시설 보수 및 청소 등)는 제3자에게 위탁이 가능하나,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의 위탁은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음.

- 본 제3자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본 유스호스텔의 시설과 기능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것으로,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식당과 카페가 부수적 사업(핵심적이지 않는 사무)으로 보고 이를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보임.
 - 다만, 제3자에게 위탁하는 시설은 모두 수익시설로, 민간위탁은 책임과 권한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성 및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하겠으며,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본 유스호스텔의 수탁기관과 제3자 수탁기관 간 이익충돌로 인한 공공이익의 저하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제3자 위탁의 필요성, 운영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※ **독립채산제** : 단일기업, 공기업, 기업 내의 사업부에서 재정적 관점과 자금적 관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소유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경영단위로 스스로의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영관리제도.

※ 「**청소년활동 진흥법**」 제39조(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)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※ 「**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**」 제15조의8(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) 법 제39조제2항에서 “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
2.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(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)

※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15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⑥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. 다만,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.

○ 현 수탁기관은 2024년 운영평가(2023.1.~12. 운영성과 평가)에서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한 가동률 향상, 회계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, 시설 노후화에 따른 충당예치금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.

- 신규 수탁기관 선정시 위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, 평생교육국의 선정기준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개선의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45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2월 3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위탁기간이 2025. 6. 30. 만료 예정임에 따라,
- 나.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고,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
○ 추진의 필요성

-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,
- 서울특별시의 공공화된 최상의 글로벌 청소년 숙박공간과 전세계 여행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함
- 「청소년 기본법」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,
- 여행청소년에게 질 높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고,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국내·외 여행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
- 국내·외 여행청소년의 교류활동 지원 및 생활지도·보호사업
- 유스호스텔의 시설보수 및 안전 등 물적 설비 관리 등

라. 제3자 재위탁 : 해당

- 필요성 :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갖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위탁
 - 제3자 재위탁 중(예정)인 사무 : 2건
 - 카페 운영 1건 및 식당 운영 1건
- (현 계약기간 : 2023.7.1. ~ 2025.6.30.)

마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
- 개관일자 : 2011. 3. 28.
- 시설규모 : 부지 1,597 m^2 / 건물 9,807 m^2
- 주요시설 : 객실(95실), 회의실(6실), 편의시설(요리실, 카페, 레스토랑, 세탁실 등)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- 위치도



바. 민간위탁기간: 3년(2025.7.1. ~ 2028.6.30.)

사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아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4,160백만원('25년)
- 산출근거
 - 인건비 1,530백만원, 운영비 1,861백만원, 사업비 338백만원, 사업외지출 및 기타 431백만원

자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
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-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09.3.18., 2009.7.30., 2014.5.14., 2019.9.26.>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협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1.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
 2. 위탁기간
 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 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5. 노동자에 대한 고용·노동조건 개선노력
 6. 지도·점검,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
 7.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태영 (☎02-2133-4124)